

의안번호	2218287
의 퇴 인	권영진의원
회 답 일	2026. 7. 3.
추 계 번호	26B21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2조의3(자동차 제작자등의 교육 등) 신설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자기인증에 관한 교육(이하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이라 한다)을 일정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 안 제52조1)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도 자기인증 교육을 받아야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자동차자기인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자동차자기인증 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2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교육 등)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1) 안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2조의3,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2. 상세 사유

- 현행법²⁾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도록 하는 자동차자기인증제도를 두고 있음
-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함

[표 1] 자동차자기인증 현황: 2025년 기준

(단위: 건)

구 분	자동차		이륜자동차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자기인증능력 요건 충족	6,544	1,483	17	404
자기인증능력 요건 미충족	17,656	277	39	58
합 계	24,200	1,760	56	462

자료: 국토교통부

- 2)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이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자기인증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전북특별자치도 및 김제시)의 예산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김제특장차인증센터에서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표 2] 자동차자기인증교육 실시 현황: 2023~2025년

실시 시기	실시 대상	실시기관(장소)	예산(백만원)
2023.2.27.~12.31.	- 자동차제작자등 162개사(743명)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제특장차인증센터)	150 전북도 100, 김제시 50
2024.3.15.~12.31.	- 자동차제작자등 102개사(364명)		150 전북도 100, 김제시 50
2025.4.8.~12.31.	- 자동차제작자등 110개사(399명)		150 전북도 100, 김제시 50

자료: 국토교통부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에 대한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현행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의 대상 및 지역 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의 확대 실시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자기인증교육 대상·지역 등의 규모, 국가의 재정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